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서미화 · 정태호
한정애 · 이재정 · 한민수
김영배 · 강준현 · 위성곤
박민규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·검찰청·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, 재판서,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,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, 체격,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,

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,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신설)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신입자 특정의 특례) ①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용하는 신입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상, 체격, 성별 또는 용모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입자를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인적사항 확인에 관하여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3(신입자 특정의 특례)</u> ①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용하는 신입자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상, 체격, 성별 또는 용모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입자를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 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인적사항 확인에 관하여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